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6-7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82호(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실시계획 폐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26-8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6-687호	개나리(화정13호)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4
고양시 공고 제2026-693호	중산체육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6
고양시 공고 제2026-69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일산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8

고양시 고시 제2026-7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82호(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실시계획 폐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6-11호(2026. 1. 13.)로 실시계획 고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5번지 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82호(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82호)이 폐지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따라 실시계획 폐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3. 10.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 폐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82호(중산2동 행정복지센터)]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대지면적 : 1,818.7㎡
- 2) 건축면적 : 934.986㎡
- 3) 연 면 적 : 2,980.447㎡
- 4) 층 수 : 지하 1층 / 지상 3층
- 5)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6) 용적률/건폐율 : 117.11% / 51.4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재산관리과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27. 11. 30.

바. 폐지 사유

- 고양시 고시 제2026-40호(2026. 1. 3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82호)이 폐지 결정됨에 따라,
- 고양시 고시 제2026-11호(2026. 1. 13.)로 「건축법」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처리 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82호)사업 실시계획 폐지

사. 실시계획 폐지일 : 2026. 3. 10.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라”항과 동일

차.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일산동구 중산동	1705	대	1,818.7	1,818.7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고양시 고시 제2026 - 8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2번지 일원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	탄현 근린 공원	근린 공원	탄현동 92-18 번지 일원	탄현동 1472 번지 일원	88,127.4	감) 248	87,879.4	경기도 고시 제147호 (1974.05.16.)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0	탄현근린공원	○ 면적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등에 따른 면적 변경 ○ 토지 합병에 따른 위치(지번) 정정

※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6-687호

개나리(화정13호)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90번지 일원 개나리(화정13호)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고 양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개나리 (화정13호)	어린이공원	덕양구 화정동 890번지	2,417.5	-	2,417.5	경기도 고시 제1992-504호 (1992.1.11.)

2.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사유

공원명	공원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개나리 (화정13호)	어린이공원	공원 세부시설 면적 변경 - 1,267.9㎡→1,255.7㎡ (감 12.2㎡)	공원 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원 환경개선

3.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안)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 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동 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합 계		2,417.5	1,267.9		12.3	12.3	34	2,417.5	1,255.7	1	37.6	37.6	43	시설면적: 감 12.2㎡
기 반 시 설	소 계	854.0	854.0				-	587.3	587.3				-	감 266.7㎡
	도 로	61.0	61.0				-	95.8	95.8				-	증 34.8㎡
	광 장	793.0	793.0				-	491.5	491.5				-	감 301.5㎡
휴양시설		-	-				15	90.0	90.0				29	증 90.0㎡
유흥시설		401.6	401.6				7	309.7	309.7				3	감 91.9㎡
운동시설		-	-				4	185.4	185.4				4	증 185.4㎡
편익시설		12.3	12.3	1	12.3	12.3	-	83.3	83.3	1	37.6	37.6	-	증 71.0㎡
관리시설		-	-				8	-	-				7	-
녹지 및 기타		1,149.6	-				-	1,161.8	-				-	증 12.2㎡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031-8075-4388)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1, 2층

7. 본 조성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산체육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5번지 일원 중산체육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고 양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중산	체육공원	일산동구 중산동 1565번지	82,113.7	-	82,113.7	경기도 고시 제1974-147호 (1974.5.16.)

2.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사유

공원명	공원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산	체육공원	• 동물놀이터 신설 (700.0㎡)	• 지역주민의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한 동물놀이터 조성

3.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안)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 물 (기)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 물 (기)	
				동 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동 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합 계		82,113.7	40,657.3	11	3,870.7	7,232.5	105	82,113.7	41,008.4	11	3,870.7	7,232.5	108	시설면적: 증 351.1㎡
기 반 시 설	소 계	11,272.9	11,272.9					11,272.9	11,272.9					
	도 로	7,129.0	7,129.0					7,129.0	7,129.0					
	광 장	4,143.9	4,143.9					4,143.9	4,143.9					
조경시설							15						15	
휴양시설							72						72	
유흥시설		1,170.0	1,170.0				21	821.1	821.1				21	감 348.9㎡
운동시설		25,718.2	25,718.2	3	3,281.9	3,603.5		25,718.2	25,718.2	6	3,281.9	3,603.5		
편익시설		2,271.3	2,271.3	6	441.3	3,481.5		2,271.3	2,271.3	2	441.3	3,481.5		
관리시설		224.9	224.9	2	147.5	147.5		224.9	224.9	2	147.5	147.5		
그밖의 시설								700.0	700.0					증 700.0㎡
녹지		41,456.4						41,105.3						감 351.1㎡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031-8075-4388)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1, 2층

7. 본 조성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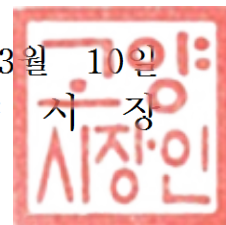
8.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6-69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일산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1.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673-4번지 일원의 「일산제1공영주차장 확장사업」 관련, 고양 도시관리계획(일산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10일
고양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91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일산동구 중산동 1669-4 번지 일원	233,014.2	고양시 고시 제2010-246호 (2010.11.2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결정 내용	변경 사유
91	· 구역명 변경 - 기정: 일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변경: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구역명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 하고자 함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71	노외주차장	일산동 1673-5 일원	663.2	증) 470.9	1,134.1	고고제31호 01-04-09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변경 사유
71	노외 주차장	노외주차장 확장 기정) 663.2㎡ 변경) 1,134.1㎡(증470.9㎡)	주차수요 증가로 기존 주차면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폐쇄된 인접 게이트볼장(공공공지26)을 일산제1공영주차장(주차장71)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공간시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26	공공공지	일산동 1673-4 일원	470.9	감) 470.9	-	고고제31호 01-04-09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변경 사유
26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주차수요 증가로 기존 주차면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폐쇄된 인접 게이트볼장(공공공지26)을 일산제1공영주차장(주차장71)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주차장용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C1	1,770.8	2,241.7	1	일산동 1681-3차	201.40		—
C2			2	중산동 1667차	357.20		—
C3			3	일산동 1673-5차	663.20	1,134.10	노외주차장 확장
C4			4	중산동 1659차	549.00		

■ 주차장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 내용	변경 사유
C3	노외주차장 확장 기정) 663.2㎡ 변경) 1,134.1㎡ (증 470.9㎡)	주차수요 증가로 기존 주차면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폐쇄된 인접 게이트볼장(공공공지26)을 일산제1공영주차장(주차장71)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	
C3	도면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용도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C3	60% 이하
		용적률		C3	23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분	기정	변경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고양시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민간부문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 생략 -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고양시 일산동 지구단위계획”중 민간부문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 생략 -
	제2조 (지침의 적용) 본 지침은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제1종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본 지침은 일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제1종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15. “최고층수”라 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6. “최저층수”라 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1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6.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제18조 (건폐율·용적률·층수) ③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의 위치가 정하여진 곳에는 지어지는 지상부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 지정된 아파트 유형이어야 한다. - 생략 -	제18조 (건폐율·용적률·층수) ③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의 위치가 정하여진 곳에는 지어지는 지상부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 지정된 아파트 유형이어야 한다. - 생략 -
	제24조 (주차장 설치기준)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동선이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걸쳐 연결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주택단지내 도로를 서로 연결한다. - 생략 -	제24조 (주차장 설치기준)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동선이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걸쳐 연결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주택단지내 도로를 서로 연결한다. - 생략 -

구분	기정	변경
	- 제29조 (부대복리시설)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놀이, 휴게, 주민운동시설 등의 위치로 지정된 곳에는 다음의 부대복리시설 중 2가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생략 -	- 제29조 (부대복리시설)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놀이, 휴게, 주민운동시설 등의 위치로 지정된 곳에는 다음의 부대복리시설 중 2가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생략 -
	- 제30조 (건물의 배치)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방향이 지정된 위치에는 지시된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제30조 (건물의 배치)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방향이 지정된 위치에는 지시된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제39조 (대지의 분할)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모든 획지는 2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생략 -	- 제39조 (대지의 분할)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모든 획지는 2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생략 -
	- 제43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출입구간으로 지정된 곳 - 생략 -	- 제43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출입구간으로 지정된 곳 - 생략 -
	- 제52조 (대지의 분할)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나 당해 허가권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대지의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다.	- 제52조 (대지의 분할)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나 당해 허가권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대지의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다.
	- 제77조 (건축허가 및 심의)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 및 심의 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도서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표기 및 필요한 경우 관련부분 상세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 유도, 권장사항의 명기 다. 건축물의 조망 및 스카이라인 계획 라.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등) 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 제77조 (건축허가 및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 및 심의 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도서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표기 및 필요한 경우 관련부분 상세 나.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 유도, 권장사항의 명기 다. 건축물의 조망 및 스카이라인 계획 라.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등) 마.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구분	기정	변경
	- 제79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지정 및 변경,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79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지정 및 변경,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80조 (지침의 변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생략 - 3. 기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침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 제80조 (지침의 변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생략 - 3.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침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고양시 일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분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고양시 일산동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분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타사항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3. 10.(화) ~ 2026. 3. 24.(화) (※공고일부터 15일간)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일산동구청 건축과, 일산서구청 건축과, 일산2동·중산1동·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 관련 도서: “계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 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공람 내용의 복사 및 사진촬영 등을 금지합니다.